공고 제 14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08일

병점2동장 화성시 병점2동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정	김 *정 1976-05-19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(병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19
김 *정	김 *수 1969-11-26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(병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19
김 *정	김 *율 2010-09-23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(병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19
김 *정	김 *연 2014-01-17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(병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19